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5
----------	-------

제출년월일 : 2012. 10.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사유

문화와 관광을 조화روی 발전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구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생활안전과를 폐지하고 안전도시와 재난관리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발전과 종교계의 풍부한 지역 자원 협력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과를 신설함. (안 제4조제1항)
- 나.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국명칭을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다.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국별로 6개과를 둬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국장의 부서 관리범위를 조정함. (안 제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9.28. ~ 2012.10. 4. (제출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2.10. 9.)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둔다.”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공보관광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생활안전과·민원여권과를 둔다.”를 “총무과·공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8호와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8. 생활체육·건전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9. 종교 및 종교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를 둔다.”를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8호부터 29호까지와 제33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공원녹지과를 둔다.”를 “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을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1호부터 제

27호까지와 제3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연료판매소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4.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5. 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6.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7.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48. 오수,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9.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50.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51. 물 관리에 관한 사항
52.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53.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54.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55.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6.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를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지적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8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39.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0.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41.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42.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43.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4.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의 설치”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를 “법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공보관광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생활안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제4호 중 “생활안전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생활안전과”를 “총무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생활안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
항 중 “유통관리팀장”을 “생활경제팀장”으로 한다.

② 이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u>을 둔다.</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u>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u>을 둔다.</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u>총무과·공보관광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생활안전과·민원여권과</u>를 둔다.</p> <p>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7. (생략) <신설> <신설></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u>총무과·공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u>를 둔다.</p> <p>② 1.~37. (현행과 같음) 38. <u>생활체육·건강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39. <u>종교 및 종교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u></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생략)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1. (생략) 22. <u>연료 판매소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23. <u>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u> 24. <u>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25. <u>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26.~41. (생략)</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1.~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41.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u>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u>를 둔다.</p>	<p>제6조(주민생활국) ① <u>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u>를 둔다.</p>

현행	개정안
<p>② 주민생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7. (생략)</p> <p>28. <u>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29. <u>오수,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30.~32. (생략)</p> <p>33. <u>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u></p> <p>34. <u>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u></p> <p>35. <u>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36. <u>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u></p> <p>37. <u>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u></p> <p>38. <u>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u></p> <p>39. <u>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p> <p>40. <u>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p>	<p>②</p> <p>.....</p> <p>1.~27. (현행과 같음)</p> <p>28. <삭제></p> <p>29. <삭제></p> <p>30.~32. (현행과 같음)</p> <p>33. <삭제></p> <p>34. <삭제></p> <p>35. <삭제></p> <p>36. <삭제></p> <p>37. <삭제></p> <p>38. <삭제></p> <p>39. <삭제></p> <p>40. <삭제></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u>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공원녹지과를 둔다.</u></p> <p>② <u>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20의3. (생략)</p> <p>21. <u>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u></p> <p>22. <u>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23. <u>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u></p> <p>24. <u>지가조사에 관한 사항</u></p> <p>25. <u>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u></p> <p>26. <u>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제7조(도시환경국) ① <u>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u></p> <p>② <u>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u></p> <p>.....</p> <p>1.~20의3. (현행과 같음)</p> <p>21. <삭제></p> <p>22. <삭제></p> <p>23. <삭제></p> <p>24. <삭제></p> <p>25. <삭제></p> <p>26. <삭제></p>

현행	개정안
<p>27. <u>새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28.~33. (생략) 34. <u>생활체육·건강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35.~4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27. <삭제> 28.~33. (현행과 같음) 34. <삭제> 35.~42. (현행과 같음) 43. <u>연료 판매소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44. <u>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u> 45. <u>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46. <u>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47. <u>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u> 48. <u>오수,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49. <u>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u> 50. <u>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u> 51. <u>물 관리에 관한 사항</u> 52. <u>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u> 53. <u>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u> 54. <u>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u> 55. <u>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 56. <u>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u>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u> ② <u>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u>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지적과를 둔다.</u> ②</p>

현행	개정안
<p>1.~37.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3조(직무) ① (생략)</p> <p>② 동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p> <p>제15조(관할구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 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 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1.~37. (현행과 같음)</p> <p>38.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p> <p>39.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40.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p> <p>41.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p> <p>42.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p> <p>43.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44.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제1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의 설치</p> <p>제15조(관할구역)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 에 법 제 4조의2제4항 규정에</p>